

[별표 3]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기준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기준

1.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보존조치 방안 근거	
① 유물 확인이나 수습	대상지역에서 특정시대의 유물을 확인되거나 수습된 경우
② 주변 또는 연결된 지형에서 기존에 유적 조사	대상지역의 주변 또는 지형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시·발굴조사 등을 통해 유적이 확인된 경우
③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기존 지표조사 결과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지형	주변지역의 기존 발굴조사 결과 대상지역이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경우
⑤ 원지형 잔존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아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다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 기타	문헌 등을 통해 대상지역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2.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세부기준

유산 구분		보존조치 방안	세부기준
비지정 유산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상보존	1. 현지보존 유적(법 제14조) 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문)위원 3인 이상의 검토를 거쳐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밀 발굴조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가유산의 매장 가능성이 확정적이며, 범위와 성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시굴조사	1.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이 잔존한 경우 < ① + ⑤ > 2.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① + ②~⑥ 중 2가지 이상 > 3.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지만,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표본조사	1.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 잔존을 제외한 다른 근거가 확인된 경우 < ① + ②③④⑥ 중 1가지 > 2. 해당근거가 하나 정도만 확인되는 경우 < ①~⑥ 중 1가지 > 3.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지만, 원지형의 훼손이 국가유산의 매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백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원지형 일부 훼손 >